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11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중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	3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27.

3. 회 부 일 :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어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담당 사업인 수산업과는 무관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 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수산업발전의 효율적 정책 추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 수산업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7조 제1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1. 중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 하던 현행 체계를 변경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그 결정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u>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u>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u>중앙회의 사무소의-----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 특별시에 두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 당시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음.¹⁾
- 개정안은 중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소재지를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회가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중앙회는 어업인의 자주적 협동과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주사무소 소재지가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만큼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중앙회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통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는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타 법률에서도 주사무소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한 사례와 정관에 위임한 사례가 모두 존재함.²⁾

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1962. 4. 1.]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제108조 (사무소와 구역) ①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2) 이 중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종전에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 다만, 주사무소의 이전 여부를 정관에 위임할 경우 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 변경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³⁾ 총회가 전국 회원조합(91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원조합 간 실질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⁴⁾

또한 회원조합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규모·경영여건·정책 환경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의견 조정에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있음.

□ 해양수산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위임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한 경우이고, 국민연금공단은 종전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시한 경우임. 입법례는 [참고 1] 참조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해임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1조(회원) 본회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제4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대표이사,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해임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특별증자의 결정

6. 출자감소

7.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으므로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수협중앙회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협동조합의 자율성 원칙과 조직운영의 자유를 고려할 때 주사무소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과도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전 비용·인프라 활용 가능성 등 조직 운영상 고려요인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회원조합 의견 수렴 결과(84개 조합 회신)도 찬성 16개, 현행 유지 68개로, 다수 조합은 정책대응력·행정효율성·접근성 문제,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 개입 우려 등을 이유로 현행 체계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지방이전 여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회원조합 간 의견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주사무소 소재지 관련 입법례

구 분	기관명	법률 규정
법률 명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u>서울특별시</u>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제54조(목적과 설립)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u>서울특별시</u>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u> 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u>서울특별시</u> 에 둔다.
법 제정 시부터 정관 위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제10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u>정관으로 정한다</u>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u>정관으로 정한다</u> .
법률 개정을 통해 정관 위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 제88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개정 전: 제50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u> 에 두고, 그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② 중앙회는 <u>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개정 전: 제57조(사무소) 연합회는 <u>서울특별시</u> 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설립)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주된 사무소</u> 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개정 전: 제25조(설립) ④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u> 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주된 사무소를 둔다. ※ 개정 전: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u> 에 둔다.
법률 개정을 통해 명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基金理事)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u>전북특별자치도</u> 로 한다. ※ 개정 전: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

참고 2

협동조합 중앙회 소재지 현황

구 분	관련 조문	現 소재지	비 고
수협 중앙회	법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농협 중앙회	법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서울시 중구	
산림조합 중앙회	법 제88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신협 중앙회	법 65조(구역과 사무소 등) ②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대전시 서구	
새마을금고 중앙회	법 제54조(목적과 설립)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중소기업 중앙회	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 3

수협중앙회 지사무소 현황 및 주요 기능

구 분	명 칭	소재지	주요기능
연수원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연 수 원	충 남 천 안 시	· 본회 및 회원조합 직원 교육훈련 세부계획 수립·조정 및 실시
지역 본부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 남 본	부 경상남도 창원 시	· 지역관내 어정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 향 추진 · 지역관련 현안사항 업 무·공제사업 및 정책 보험 사업추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 남 본	부 광주광역시 서 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 인 본	부 인천광역시 중 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 원 본	부 강원도 강릉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충 청 본	부 충청남도 보령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 북 본	부 전라북도 군산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 북 본	부 경상북도 포항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 산 본	부 부산광역시 중 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 주 본	부 제주도 제주시	
어선 안전 조업국 (2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 천 어선안전조업국	인천광역시 중 구	· 연근해 출어선 동태 파악 및 분석 · 수산재해 및 어선 해양사고 예방지도 ·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및 교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 어선안전조업국	강원도 강릉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속초 어선안전조업국	강원도 속초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동해 어선안전조업국	강원도 동해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태안 어선안전조업국	충청남도 태안 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군산 어선안전조업국	전라북도 군산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목포 어선안전조업국	전라남도 목포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 어선안전조업국	전라남도 여수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울릉 어선안전조업국	경상북도 울릉 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울진 어선안전조업국	경상북도 울진 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항 어선안전조업국	경상북도 포항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통영 어선안전조업국	경상남도 통영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울산 어선안전조업국	울산광역시 동 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삼천포 어선안전조업국	경상남도 사천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 어선안전조업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 어선안전조업국	제주도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령 어선안전조업국	충청남도 보령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완도 어선안전조업국	전라남도 완도 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흥 어선안전조업국	전라남도 고흥 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창원 어선안전조업국	경상남도 창원 시	

구 분	명 칭	소 재 지	주 요 기 능
공판장 (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서수산물 공 판 장	서울특별시 강 서 구	· 수탁 수산물의 판매 · 수산물의 수매·검수·운송 · 저장·판매 등 · 원산지 단속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리동수산물 공 판 장	서울특별시 송 파 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리수산물 공 판 장	경 기 도 구 리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수산물 공 판 장	인천광역시 중 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주수산물 공 판 장	전라북도 전 주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수산물 공 판 장	광주광역시 서 구	
(가공) 물류 센터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감 천 향 물 류 센 터	부산광역시 서 구	· 냉동·냉장 보관 · 수산물 가공품 생산 · 군급식 관련 영업활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천 안 물 류 센 터	충청남도 천 안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북부 물 류 센 터	경 기 도 포 천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 원 물 류 센 터	강 원 도 춘 천 시	
사업소 (1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동 해 자 재 사 업 소	울산광역시 남 구	· 자재사업소 - 어업용 유류의 수송, 공급, 재고 관리 -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사업 추진 · 무역지원센터 - 수산물 홍보 및 판촉 지원 - 수출입업무 현지 지원 - 신규 거래선 및 품목 발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남 해 자 재 사 업 소	전라남도 여 수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 해 자 재 사 업 소	전라북도 군 산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 하 이 무역 지원 센터	중 국 상 하 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칭 다 오 무역 지원 센터	중 국 칭 다 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L A 무역 지원 센터	미 국 L A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이베이 무역 지원 센터	대 만 타이베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도 교 무역 지원 센터	일 본 도 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호 치 민 무역 지원 센터	베 트 남 호 치 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뉴 저 지 무역 지원 센터	미 국 뉴 저 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카르타 무역 지원 센터	인 도 네 시아 자카르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방 콕 무역 지원 센터	태 국 방 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홍 콩 무역 지원 센터	중 국 홍 콩	

자료: 해양수산부